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24

발의연월일: 2022. 2. 24.

발 의 자:서일준・이명수・김용판

추경호 • 권명호 • 하영제

김승수 · 박완수 · 이종성

김미애 · 양금희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있으나, 관련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복귀시키고 일자리 증가를 위한 기업들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액공제를 계속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12월 31일-----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 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

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 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 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 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 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 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 지 아니한다.

1.	\sim	3.	(생	략)

③ ~ ⑥ (생 략)

<u>026년 12월 31일</u>
1 0 /처체되 가야)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